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영점 운영요건 강화 등〉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8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영점 운영요건 강화	3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확대	8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12.
- (3)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 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

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② 가맹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경우를 포함(안 제6조의3제3호).

나.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직영점 운영요건 강화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3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직영점 운영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현행	개정안
<u>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u>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u><신 설></u>	----- ----- ----- ----- ----- ----- ----- -----. <u>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제9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영점이 3개 미만인 때</u> <u>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¹⁾.

○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영점 운영의무는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에 도입하였음.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²⁾가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직영점 운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임.

1)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2024년 기준 업종별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 현황>

(단위: 개, %)

가맹점수	외식		도소매		서비스		합계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100개이상	314	3.2	43	7.5	138	7.1	495	4.0
10개~99개	2,199	22.3	152	26.6	534	27.6	2,885	23.3
10개 미만	7,360	74.5	376	65.8	1,261	65.2	8,997	72.7
합계	9,873	100.0	571	100.0	1,933	100.0	12,377	100.0

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p.8(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4. 9.)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대형 가맹본부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검증이 다소 미흡한 가맹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3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전체의 5.7%에 불과한 상황에서 직영점 운영요건을 강화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브랜드별 직영점 수 현황>

(단위: 개, %)

직영점수	외식		도소매		서비스		합계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0개	6,324	64.1	272	47.6	1,089	56.3	7,685	62.1
1개	2,692	27.3	171	29.9	536	27.7	3,399	27.5
2개	431	4.4	39	6.8	116	6.0	586	4.7
3개 이상	426	4.3	89	15.6	192	9.9	707	5.7
합계	9,873	100.0	571	100.0	1,933	100.0	12,377	100.0

* 2024년 말 등록된 가맹 브랜드의 2023년 말 기준 직영점 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환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⑤ 법 제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영점 운영요건 강화는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확대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 ----- ----- ----- <u>. 또한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u>가맹계약 체결일부터</u>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 ---- <u>제공일</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함.³⁾

○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최저액의 1.7배 이내)으로 획정한 범위와 그 산출 근거를 작성한 서면을 말하는데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가맹본부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⁵⁾.

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향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달리,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보다 예상매출액을 더 정확히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별 가맹점의 매출은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맹점주에게까지 제공 대상을 확대할 실익이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문 의 처
02)6788-5114